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14
----------	------

2021년 5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4월 2일 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
2.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3. 상정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경우 의원)

1. 제안이유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만성질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만성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의 접근성이 높은 보건의료기관에서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보건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자원으로, 이를 활용해 시민들의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다. 만성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라. 수행기관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의료법」 , 「약사법」
- 나. 예산 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제정안의 취지

- 본 제정안은 민간보건의료기관이 시민에게 만성질환관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해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발의되었음.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1) 총칙 (안 제1조~제3조)

- 제정안 제1조는 서울시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제정안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 2조에서는 주요용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안에서는 만성질환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그 외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만성질환의 범위와는 크게 상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수가(酬價) 시범사업의 경우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인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의 경우 심뇌혈관질환 선형 질환인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지원사업 (안 제4조)

- 본 조례에서는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 질병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 역량강화 사업 등에 대해 의료기관, 약국 등에 보조금, 장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민건강국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과 세이프약국 사업을 통해 민간보건의료기관 활용을 통한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가)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은 지역내 민간의원-자치구 보건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등록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과 지속치료를 높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및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거나 자가관리 교육을 받으면 건강포인트가 생기게 되고, 이 포인트로 추가적인 건강관리(필수검사, 예방접종)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2019년 기준 총 12개 자치구, 의원 242개소가 사업에 참여하였고, 등록환자는 27,976명이며 등록환자의 11.5%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 치료율은 고혈압 환자가 70.6%, 당뇨병 환자가 78.4%인 것으로 나타남.

(나) 세이프약국 사업

- 세이프약국 사업은 접근도가 높은 서울시내 약국 및 약사인력을 활용하여 약물복용량이 많은 환자의 포괄적 약력관리를 시행하고, 보건소 자살예방·금연사업과의 적극적 연계로 지역사회 약국의 역할 강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지역 내 세이프약국으로 선정된 약국은 약국을 방문하는 의약품 복용자 중 희망자 또는 관리가 필요한 자를 선정해 포괄적 약력관리¹⁾, 생활습관 및 건강행태 관리, 정신건강지지, 금연 사업 등과 연계를 시행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서울시 23개 자치구에서 참여해 총 21,818명(약력관리 서비스 21,078명, 금연사업 연계 726명, 정신센터 연계 1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제정안에서는 보조금, 장비 등의 재정적 지원으로 지원내역을 명시했으나,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음.

(3) 수행기관의 책무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선정된 수행기관에 대하여 상위법인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에서는 만성질환자와 관련해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과 세이프약국에 참여하는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 20년도 기준 약 총 1,552,683천원²⁾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1) 세이프 약국에서 제공하는 포괄적 약력관리 상담은 복약지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약력관리 등록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 상담을 실시하고, 중복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오·남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 및 폐의약품수거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약품 상담과 관리를 제공하는 개념이다(서울연구원, 2020)

2) 서울시 시민건강 마일리지사업 예산 863,750천원, 세이프약국 예산 688,933천원

- 다만, 민간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할 경우 제공 인력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사업수행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것임.
- 또한 관련사업의 이용실적 등을 별도로 활용해 서울시 만성질환자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집행부 의견

- 집행부는 민간보건의료기관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제정취지에 공감하나,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한 일부 조항(제4조제2항)에 대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3 종합의견

- 만성질환은 급성질환과는 달리 환자 스스로의 관리가 중요하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중재 및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하겠음.³⁾
- 중앙정부에서는 일차의료기관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고혈압과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유병자의 치료율은 약 60%정도이고, 혈압과 혈당 조절률은 모두 50%에 미치지 못하여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또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 만성질환자의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효과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⁴⁾

- 서울시에서는 기존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민간의료 보건기관인 일차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관리하고자 사업을 시행하여 왔음.
- 제정안은 서울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수행해 오던 기존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서 지정해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음.
-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나,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바,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공인력의 역량에 따라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기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4) 황정해, 최윤경, 이연경, 윤난희 (2020). 우리나라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이용자의 경험 분석 :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기초하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5), 51-67.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14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4월 02일
발 의 자 : 김경우, 경만선, 권영희,
김용석, 김제리, 김화숙,
박기재, 서윤기, 신정호,
이상훈, 이영실, 이준형,
이호대, 임종국, 장인홍,
조상호, 채유미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만성질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만성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의 접근성이 높은 보건의료기관에서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보건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자원으로, 이를 활용해 시민들의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다. 만성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라. 수행기관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약사법」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장기간 발병해 지속되는 질환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 가. 고혈압
 - 나. 당뇨병
 - 다. 이상지질혈증
 - 라. 심뇌혈관질환
 - 마. 그 외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
2. “건강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등록관리, 예방교육, 진료, 상담, 약료서비스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이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시장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시민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

2. 만성질환자의 질병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3. 만성질환자의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역량 강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의 수행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에 보조금, 장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사업의 대상인 시민에게 검사·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수행 및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행기관의 책무) ①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기관

은 「의료법」 과 「약사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이 「의료법」 또는 「약사법」 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 또는 장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병·의원·약국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